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3. 5. 6(충청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03. 5. 6
- 다. 상정일자 : 2003. 5. 20 제1차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환경국장 박관규)

가. 제안경위 및 이유

- 2002년 11월 12일 우리위원회소속 김문천의원의 소개로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공동대표(노영우, 김범추, 박동철)로부터 청원이 제기되어 제207회 임시회 제2차교육사회위원회(2002.12.4)에 상정 심도있는 심사결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정토록 의결한 사항으로
- 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에 대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허가토록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 우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상 및 순위는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세대주와 2)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이상의 노인, 3)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 순으로 하며
-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과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는 것 등 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석규)

- 먼저 동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계약체결 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 제6조의 사업자의 의무, 제7조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감시 감독하고 검증하기 수월하도록 계약체결 기간을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 동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대리인 규정이 모호하여 자칫 실제 부양하지도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운영권을 행사하고 실제 장애인 등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바 직계존비속 앞의 “및”을 “와”로 수정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 안 제7조에서는 사전허가 없이 전매 또는 양도한 자가 향후 허가를 재 신청할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 *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로 부터 향후 ○년간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경기도 2년, 인천광역시 3년)
-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사항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가 용어의 중복 사용과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아 그 대상을 쉽게 인지 할 수 없는바, 이를 명확·간결히 하고자 하며(안 제3조)
-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등을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검증하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며(안 제5조 2항)
- 동 조례안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다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해지일 이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고(안 제7조)
- 부칙의 내용을 시행일과 경과조치로 구분하여 기득권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고(부칙)
- 기타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 할 수 있는 대상의 문맥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조 제2항)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1항 중
 -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를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 중
 - “3년”를 “2년”으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6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인, 노인 및 모자가정이 사회·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어 이들의 생업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골자

-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며 매점의 설치규모는 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하도록 함(제2조)
-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전에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함(제3조)
- 우선허가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으로 함(제4조)
-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등은 직접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제5조, 제6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공공시설내의 매점(1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충청북도지사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과 도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공보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3. 모자복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

②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월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 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 호대상 모자가정 중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 세 대상자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모자복지법

제15조(공공시설내 매점 및 시설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정의) ①이 법에서 “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3.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

②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제1항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8. 5. 20

제안자 : 김문천의원

1. 수정이유

-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가 용어의 중복 사용과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아 그 대상을 쉽게 인지 할 수 없는바, 이를 명확·간결히 하고자 하며(안 제3조)
-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 등을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검증하기 수월하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을 단축하며(안 제5조 2항)
- 동 조례안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다시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이를 해지일 이후부터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하고(안 제7조)
- 부칙의 내용을 시행일과 경과조치로 구분하여 기득권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고자 하며(부칙)
- 기타 대리인에게 운영권을 위탁 할 수 있는 대상의 자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조 제2항)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1항 중
 -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 중
 - “3년”을 “2년”으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 제1항중

- 제1호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고
- 제2호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하며
- 제3호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를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 중

- “3년”을 “2년”으로 하고

○ 안 제6조 제2항 중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를 삽입하며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를
-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p> <p>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관리하는 공공시설</p> <p>3. 도의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p> <p>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①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p> <p>②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발표와 같으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 -----</p> <p>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도본청 및 소속 기관 사업소</p> <p>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p> <p>3. 기타 충청북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p> <p>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2년 -----</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내장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적잖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p> <p>②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장애등급 2급이상인자와 정신지체장애인은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6조(사업자의 의무)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배우자 및 동일한 조건의 직계존·비속) -----</p>
<p>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p> <p>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월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7조(계약해지) ①(개정안과 같음)</p> <p>②(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해지일 이후 변경 및 자동판매기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계약된 매장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중지의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계약된 매장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p>